

강원도지방경찰청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미시령 구간단속 제한속도 상향 건의 회시

1. 평소 경찰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.

2.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국가지원지방도(56호) 「미시령 터널 구간과속단속시스템 운용 관련 제한 속도 60km/hr →80km/hr로 상향 조정」 건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.

《 회시 내용 》

○ 미시령 터널은 '06. 5. 3 개통 이후 '08. 12. 31까지 터널 →요금소 구간에서 총 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3명, 중?경상 216명의 인피와 액수 불상의 물피가 발생하였습니다.

○ 이와 관련, 경찰에서는 도로관리청과 협조, 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과속단속 장비2대와 각종 안전시설물을 보완하였으나, 계속되는 사고발생 및 대형사고위험성도 상시 잠재하고 있어 구간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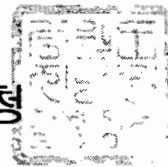
○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제한속도 상향 건의가 소통이라는 도로의기능적 측면을 고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

○ 경찰에서는 도로관련 유관기관인 강원도(도로교통과), 원주지방국토관리청, 도로교통공단 강원지사, 미시령관통도로(주)와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책회의를 하였으나 터널 종점에서 속초 측 산지부는 도로기하구조가 최소곡선반경 150m 이고 종단경사가 9.0%이며, 이는 국토해양부의 「도로의구조?시설기준에 관한규칙」 설계속도 60km/hr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계속도 보다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것이 불가하다는관련기관의 의견에 따라 설계속도 상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제한속도 상향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○ 앞으로도 영동지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○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끝.

강 원 도 지 방 경 찰 청 장



수신자 속초시 의회 의장(의회사무과장), 속초상공회의소장

★경위 서정관 경정 미오명 경비교통과장 전결 01/23
박영철

협조자

시행 경비교통과-001891 (2009.01.23.) 접수 의회사무과-186 (2009.01.23.)

우 200-881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352(거두리 665-3) / www.gwpolice.go.kr
강원지방경찰청

전화 033-255-6904(27 /전송 033-253-5008 / jk4439@hanmail.net / 공개
51,2851)